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제한상영가 영화 청소년 입장에 대한 처벌 완화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0525)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제한상영가 영화 청소년 입장에 대한 처벌 완화	2

I .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5. 5. 15.

다. 회 부 일 : 2025. 5. 16.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제한상영가 영화 청소년 입장에 대한 형량 완화(안 제95조)

가. 개정안 요지

-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함.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u>	<u><삭 제></u>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제95조(벌칙) ----- ----- -----

금에 처한다. <u><신 설></u> 1. (생략) 2. ~ 12. (생략)	-----.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2.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영화의 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와 ‘제한상영가’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청소년을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하고,¹⁾ 이를 위반하여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한상영가’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한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임.
-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³⁾에서는 청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76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이하 생략)

3)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